#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9 발의연월일 : 2025. 4. 28.

발 의 자: 박찬대·노종면·김교흥

유동수 · 이훈기 · 허종식

모경종 • 맹성규 • 임호선

김용만 · 진선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한 및 의한번호 제 10176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
청) ① (생 략)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	②
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	
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	
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u>지</u>	
<u>방법원</u> 에 전속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